

# 조선 후기 王權에 대한 연구: 영조 연간의 군신간 義理논쟁을 중심으로

柳美林\*

---

I. 서론	IV. 군신간의 정치적 타협: ‘大蕩平論’과
II. 주자학적 의리론과 탕평론	‘調劑’
III. 영조 연간 군주의리론과 주자의리론의	V. 결론
갈등	

---

## I. 서론

조선조는 군주가 신하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통치하는 군주제인 동시에 관료제를 통해 통치하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였다.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관료는 사실상 군주에 예속되어 군주에게 깊은 충성을 바치는 것이 신하로서의 직분이지만 주자학적 의리론이 군신관계의 중요한 이념적 지표가 된 중기 이후로는 군주의 충성요구에 대해 신하들이 재규정한 ‘忠’ 개념과 규범을 군주에게까지 내면화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충성의 대상이 군주가 아닌 붕당이나 정파로 전이되기까지 하는, 군주제하의 전형적인 군신관계의 틀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조선 후기 왕권은 군신관계의 윤리적 규범이 주자학적으로 규정되는 구속성을 지닌

---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정치학

채 역사적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왕권의 위상은 조선에서 군주가 신하들이 규정한 군신간 규범을 극복해 자신의 논리를 신하에게 요구할 만큼 강하지 못하던 군신간 역학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조선의 군주에게 통치란 수기와 치인의 양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주로서의 덕을 기르는 자질론, 즉 聖學에 치우쳐 결국은 통치력을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군주는 治人보다는 心學의 내면화에 침잠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치세력과의 길항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조선조의 권력구조에서 군신간의 정치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규범으로 기능한 것은 주자학적 의리론과 명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치과정은 주자학적 의리론의 실험무대가 될 만큼 의리론이라는 주자학적 규범에 의해 지배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체제이데올로기로서의 조선 주자학의 이념적 특성은 권력구조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주자학의 의리론적 특성은 결과적으로는 정치과정에서 군주의 정치적 역할의 축소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권력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려 했던 군주라 할지라도 君主聖學論의 心學化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데 현실감각을 결여하게 되었고, 도덕적이고 규범주의적인 주자학의 경향은 군주로 하여금 의리론을 이론적 무기로 하는 신하에 맞서 강력히 대항할 수 없게 했다. 군신관계란 권력의 소유면에서는 때로는 공유하되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관계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주자학적 의리론은 결국 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8세기의 군주인 영조도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임금이었다. 일반적으로 영조 시대는 탕평의 군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조 시대와 더불어 왕권이 안정되고 강화된 시대로서 그 위상이 매겨져 왔다. 그러나 이는 조선조 전반을 통틀어 왕권의 위상을 어떻게 매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도학적 정치문화가 우세하게 되어 君臣共治의 지배형태가 확립된 중기 이후로는 사림이나 붕당, 산림세력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의 신권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때문에 이후의 왕권은 전기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18세기의 군주는 17세기나 19세기의 군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도 사림세력이 정치세력화함으로써 구축

해 놓은 도학적 정치이념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왕권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이는 당시 군신간 갈등양상에서 군신 각 세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추동력이 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즉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며 권력구조를 규제하고 있던 요인이 이념적 요소에 의존했는가 권력정치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이에 군주를 포함한 정치세력이 공리에 입각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려 했는가, 아니면 이른바 주자학적 의리론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 후기 왕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이념성이 현실정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8세기 영·정조 시대, 이른바 ‘탕평체제’가 비교적 왕권이 강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주에 의한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나아가 현대에도 한국정치가 여러 면에서 현실주의적 시각보다는 도덕주의 혹은 규범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적지 않다고 할 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사상사적 설명의 한 단서를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분석을 토대로 군신간 의리논쟁에서 왕권이 어떻게 행사되었으며 또 어떻게 제약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 시대 왕권의 성격을 밝혀보고자 한다.

## II. 주자학적 의리론과 탕평론

### 1. 신하의 충성의무와 ‘君臣義合’적 의리개념

우선 조선조에 권력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지배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것은 군주와 제 세력과의 역학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臣에게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서 성립하는 군신공치체제와 그 대표적인 형태인 붕당정치체제, 권력중심이 특정의 세도가문 혹은 戚里에 집중되었던 세도정치체제 내지 척리지배체제, 그리고 수렴청정을 포함하는 섭정체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sup>1)</sup> 이들 체제는

1) 군주중심의 지배체제라 하더라도 정치과정과 지배형태의 성격에 따라 家産制的 지배체제나 家父長的

모두 제 정치세력간의 긴장관계와 군신간 역학구도에 따라 권력의 중심이 이동되는 변모를 보인다. 따라서 권력의 중심이 상대적으로 군주에서 신하에게 전이된 것인데 이 과정은 유교정치이념의 제도화의 진전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왕에 의한 전체적인 통치까지 허용되고 신하는 군주의 보좌역에 머물던 초기의 君主親政적인 지배형태가 주자학이 이론적으로 심화되고 체제교학으로 정착되면서 군주에게도 주자학적 규범을 강요하기에 이르자, 이 규범의 해석자이자 담지자인 사대부의 위상이 높아져 신권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본래 군신공치적인 지배형태는 주자의 ‘君臣義合’에 기초해 재상 등 관료세력과 사림세력에 의한 군주의 견제를 강조하는 정치체제로서 臣의 정치참여를 긍정하는 지배유형이다. 그리고 주자학이 군신간의 義(理)를 강조함에 따라서 최고절대의 권위는 실재하는 국왕이 아닌 가공적인 道에 있으므로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리에 합치하는 한에서만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 주자학적 의리론이 왕권을 제약하게 된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조선 후기 정치과정은 체제운용에 주자학적 통치이념이 유착된 형태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정치과정을 규제하는 데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이념적 요소는 주자학적 의리론이었다. 이때의 의리론은 물론 군신관계에 작용하는 의리론인데 유교의 군신의합에서 비롯된 의리론이 주자의 봉당론을 만나게 되면서 신하의 충성의무를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군신의합에 입각한 군신도덕은 ‘군주가 군주답지 않으면 신하가 떠나버린다’는 의미에서 계약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규범이 신하의 군주에 대한 윤리적 규범으로서 작용했던 것이다. ‘군주는 군주답지 않더라도 신하는 신하답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일본 무사의 주종관계의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쌍무계약적인<sup>2)</sup> 조선의 군신관계 규범은 군주가 옳지 않으면 군주의 결을 떠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관계이긴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군주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적극적인 요소는 나오지 않는다. 군주가 군주답지 않더라도 신하는 신하답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 주군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주군을 바르게 인도하려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전화시키는 사고

지배로 구분할 수도 있고, 조선조의 정치형태를 군주중심의 지배체제가 아닌 官人지배체제로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이 조선조의 모든 시기를 설명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마루야마 마사오, 『충성과 반역』(박충석·김석근 옮김)(서울: 나남, 1998), 401 ~ 402쪽.

방식을 내포하고 있던 것이 일본 무사의 규범이라고 한다면<sup>3)</sup> 조선에서는 諫靜이라는 형태의 강한 계기가 제도화의 차원에서 마련되긴 했지만 이것도 ‘세 번 간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 주군을 떠난다’는 의미 이상은 지니지 못했다. 오히려 조선에서는 적극적인 간쟁이나 주군보좌역으로서의 임무를 강조하기보다는 은일이나 은둔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은둔한다고 해서 신하의 군주에 대한 충성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산림’<sup>4)</sup>은 산림으로서의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과거를 외면하는 것이 곧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며 독서와 從政이 분리되지 않던 유교 본래의 교육이상의 실현이기도 했기 때문에 산림 자신이 몸은 산림에 있어도 신하로서의 직분을 저버릴 수는 없다. 국가의 전례를 위시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소사에서 시비가 엇갈리게 되었을 때 산림의 권위로써 이론을 내세워 판단을 내려주는 것도 산림으로서의 역할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산림의 유권적 해석은 유교교의와 결부되어 그것이 그대로 ‘의리’가 되고 나아가 부동의 명분으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산림의 역할이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sup>5)</sup> 그리하여 군주가 산림을 상징적 존재로서만 대우하고 산림이 군주 외척의 私人으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조선 후기에 산림의 정치적 역할이란 다른 정파에 비견될 만한 정치세력이었다.

그리고 산림세력이 권력집단으로서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론 주도력에 있었다. 일찍이 이이가 “인심이 동의하는 바를 공론이라 했고 공론이 있는 바가 國是”<sup>6)</sup>라 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공론이란 公衆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수긍해 그렇다고 여길 만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공론은 ‘公議’라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의논이 그렇듯이 여기에는 단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시뻐거리가 개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3) 위의 책, 402~403쪽.

4) 산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구선, 『조선시대 천거제도연구』(서울: 초록배, 1995): 이우성, 『이조 유교 정치와 ‘산림’의 존재』, 『한국의 역사상』(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참조. 산림 가운데서도 최고의 학자를 가리켜 儒賢으로 일컫기도 했다고 하나 후기 기록을 보면, 유현과 함께 儒臣, 山林이 널리 사용되었다. 정홍준, 『17세기 대신과 유현의 역학관계』, 『사총』, 42집(1993).

5) 이우성, 앞의 논문, 255쪽.

6) 설석규, 『16-18세기의 儒疏와 公論政治』(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73쪽에 李珣의 정의가 인용되어 있지만 出典이 나와 있지 않다.

정치과정을 보면 시비의 관별이 공론형성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공론형성이 시비의 관별에 우선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산림 자신이 공론을 우선 형성해 놓고 이를 공론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를 전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봉당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말하자면 봉당과 산림의 공론정치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봉당에 따른 당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분상으로는 항상 공론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었다. 산림의 영수인 송시열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군자소인, 시비명분을 내세우는 주자의 봉당론은 봉당간의 조정에 주력하기보다는 시비분변에 의한 편당짓기로 향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름은 공론의 형식을 취했다. 공론이 바로 의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론과 봉당이 정치적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 것은 조선에서 주자학적 통치이념이 확립되어 구양수의 봉당론에 연원을 둔 주자의 봉당론<sup>7)</sup>이 입지를 확보한 것과 연관된다. 이로써 산림의 정치세력화가 촉진되었고, 산림세력의 정치화는 군신관계를 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으로부터 선택적인 충성으로 변모시켰다. 오히려 새로운 군신관계 규범은 봉당결성의 주체로서 臣의 역할을 중요시하기까지 했다. 시비의 명분 위에 형성된 군자당은 군주까지 포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른바 ‘引君爲黨’說에 의해 군자당의 일원으로서 臣의 역할이 군주보다 중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체제가 군주집정체제 안에서 臣을 그 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주도 臣을 주체로 하는 정치구조의 일원으로 포섭되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 군자당의 공리가 군주나 국가 이익보다 앞서는 것으로 여겨져 정치과정의 대부분은 각 정파의 功利에 기초해 행해졌다. 물론 이 경우 고정된 가치 기준은 ‘주자학적 의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어느 경우에도 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과 논쟁에서 반대정파를 일소하는 데 동원되는 논리적 근거이자 이념적 무기가 되었다. 더구나 의리론은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자들의 도덕주의와도 잘 결부되는 것이었다. 이에 조선 후기 정치과정에서 주자학적 의리론이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이

7) 구양수의 봉당론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엄격히 해 ‘소인에게서 朋이 없고 군자에게만 朋이 있다’는 이른바 君子有朋論의 입장이라면, 朱子는 철저한 군자소인의 변별에서 더 나아가 군자당만을 眞朋으로 인정하고 ‘進君子 退小人’의 입장이어서 봉당간의 調停이나 並用論을 배격했다. 주자는 「與留丞相」이라는 글에서 봉당의 화는 그 賢否 忠邪를 잘 살피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고, 군자소인의 구분을 잘해 인물의 進退를 公되게 하고 조정하지 말아야 朝廷이 平平湯湯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與留丞相」, 『朱書百選』, 권3.

유는 제 정파가 원리적으로는 주자학적 의리론을 앞세워야만 정치적 권익을 추구하고 권력획득에 성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후기에는 공론의 주재자로서 군주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군주의 정치적 이해와 판단에 따라 공론이 영향받게 됨으로써 붕당에 의한 공론형성력은 약화되었다. 붕당에 의한 공론형성력이 약화되자 군주는 자신이 정치변동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는데 숙종의 경우 ‘臣強君弱’說이 나올 정도로 산림의 영향력이 강대해지자 환국이라는 정국조종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군주는 산림의 공론에 맞설 만한 이론적 무기를 필요로 했다. 박세채의 탕평론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박세채의 탕평론이 영·정조 시대에 왕권 강화를 위한 논리적 기반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주자의리론의 공고함은 번번이 정치과정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미 붕당간의 균형은 무너졌기 때문에 주자의리론과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제기된 탕평론과의 상충은 영조 즉위가 지나는 정통성과 맞물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길항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후기 정치과정은 주자의 붕당론에 근거한 의리론과 이에 기초해 형성된 산림의 공론, 그리고 각 정치세력이 실질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내세웠던 공리적 요인과 군주의 리더쉽 및 왕권 강화의 구상 등이 얽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 2. 탕평론의 제기

본래 박세채가 제기한 탕평론은 붕당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의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신대결적인 구도 속에서 신권의 비대화를 막고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당쟁의 평정에 미치는 군주의 주도권<sup>8)</sup>을 강조하고, 군주가 정파간 중재역할을 담임할 것을 역설했다. 물론 군주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중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권력을 군주로 향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편당의 풍습이 형성된 원인을 임금의 국정 주도권(極)을 잡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는 박세채는 私黨에 관계되면 임금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현실, 그리하여 충성의 대상이 군주가 아닌 사당으로 향하고 있는

8) 이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建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때 군주가 建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sup>9)</sup>을 보면, 그가 자신의 봉당관을 개진하면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계승하는 가운데 정치의 주재자로서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破朋黨’을 위한 군주의 조정(調劑) 역할을 주장하면서도 주자의 賢否忠邪 분별 논리를 인용한다든지 군주가 인재를 등용할 때의 기준을 주자의 시비변별론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하고 박세채 자신이 주자학적 봉당관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국왕주도권 논리는 노론의 일당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소론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박세채의 탕평교서는 숙종대에 계속되어 온 격변 속에서 군주가 직접 시비의 판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증대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소론계의 지지를 받아 수용되기 시작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정통 성리학자들에게는 주자의 봉당론에 입각한 군자소인 분별론이 여지없이 계승되고 있어 오히려 無黨이 위험시되었다. 정치의 과당적인 특성이란 그 기준만 명확하다면 오히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무당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無黨이 오히려 과당보다 위험시되는 사고는 철저하게 주자의 봉당관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과당의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는 탕평론의 입지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주자학적 봉당관은 숙종대 후반에 노론이 정권을 잡는 정국의 변화를 반영해 다시 제기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숙종 42년(1716)의 병신처분 이후 갈라서게 된 노론과 소론은 군자당과 소인당 사이에는 의리를 둘러싼 정치적 타협(調劑保合)<sup>10)</sup>이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타협에 의한 정치적 안정(蕩平)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시비를 분명히 해줄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시되었다. 즉 숙종 말기에는 잦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했는데 이 때문에 정국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봉당간 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해 군주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여기에 정치·사회적 상황이 그 필

9) 禹와 周나라의 義理, 宋 인종의 朋黨에 관한 교서, 孔子의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굽은 사람은 놓아둔다’는 말, 朱子의 ‘현명한가의 여부와 충성스러운지 간사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들이다.

10) 이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 『조선왕조실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調劑와 保合인데 이를 정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각 정파를 調停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성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왕권강화도 정치적 안정기보다는 정치적 변동기에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기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종 말기가 되면 이미 봉당간의 조정은 군주의 능력범위를 초월해 권력을 잡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존재마저 위협을 당할 정도의 제로섬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영조의 각 정파간 조정노력은 이러한 극한적인 대립상황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영조 연간 군주의리론과 주자의리론의 갈등

#### 1. 영조의 왕위계승과 노론에 대한 견제

영조는 숙종 연간의 정치적 격변을 지나면서 정치개입과정에서 리더쉽의 역할을 인식했는데 정치과정의 대부분은 영조의 등극을 둘러싼 정통성을 밝히는 데 집중됨으로써 의리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통성을 밝혀 지배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주자학적 의리론과 명분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노론은 영조가 즉위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진 빚을 내세워 자신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며 다른 정파의 권력획득을 견제하는 데 주자의리론을 정치적이론적 무기로 이용했다. 즉 주자의리론은 노론에 의해 그들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논리적인 무장과 변용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렇게 변용된 논리가 다시 노론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노론이 제기한 주자의리론은 의리론 자체의 논리에 의해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辛壬土禍에서의 노론의 의리를 인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다. 노론은 이러한 왜곡된 의리를 집권을 정당화하는 데, 그리고 군주와 반대정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의리론이 논리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상대정파의 반격이 있게 되므로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론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리론으로서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한 셈이다. 영조가 군주로서 등극한 상태이므로 영조의 즉위에 공이 많은 노론의 의리를 국시로 인정받는 것은 간단한 문제였다. 이에 주자의리론은 단지 군주의 권력강화 시도에 제동을 가하는 규범으

로 이론적인 변용을 이루면 될 뿐이었다. 따라서 왕권에 대한 제약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다. 즉위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론에게 빛을 졌다고 하더라도 즉위한 후에는 신임사화나 戊申亂과 같이 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근원을 제거하려면 노론의 간섭을 제한하고 군주의 권한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영조 자신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탕평’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이념을 제시한 것이지만, 영조의 탕평정책은 이렇듯 출발부터 지니고 있는 약점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힘들었던 것이다.

영조가 즉위한 다음 해에 자신을 世弟로 옹립하다 화를 입은 노론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하자<sup>11)</sup> 이를 기화로 討賊의 의리를 간하는 노론계의 疏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소론과 청남계가 물러난 상황에서 산림 이재는 김일경과 목호룡의 변고로 인해 영조가 무함당한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론계 장령 임정하는 상소에서 ‘天討를 행해 국시를 정할 것’<sup>12)</sup>을 주장하면서 노론 4대신을 충신으로, 유봉휘와 조태구를 逆臣으로 분변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경종의 질병을 공표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정권승립 초기에 노론집권의 정통성과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성 천명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통성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노론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도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영조가 이러한 의도를 파악함에 따라 노론의 전횡을 막으려는 조치가 뒤따랐다. 경종에 대한 ‘大不道’라고 해 소론과 남인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소론계 일부를 기용, 정국의 전환을 도모한 것이 그러한 조치였다. 丁未換局(1727년)은 신임사화를 거쳐 등극한 영조로서는 노론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채 독자적 통치를 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소론계 완론과 준론<sup>13)</sup> 세력 즉 조문명과 이광좌를 중심으로 하는 정국변환과 남인의 등용으로 노론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군주가 노론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정국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군주의 이러한 의도에 맞춰 군주와 결탁하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11) 이 때 李緯가 이조참판으로, 朴弼周, 李柬, 尹鳳九, 韓元震, 蔡之洪 등이 경연관으로, 李宜顯이 이조판서에 임명되는 등 노론계가 대거 관직에 진출했다.

12) 『영조실록』, 영조 2년 2월 15일 무인.

13) 본래 소론의 緩論과 峻論의 차이는 정치적 義理에 대한 言論의 준절함이나 평안함이나에 따른 구분으로 그 계기는 경종의 신임옥사 처분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1983), 39~47쪽 참조.

송인명은 ‘破朋黨’을 난국의 구제책으로 제시함으로써 영조의 의중을 잘 헤아려 반응하고자 했다. 노론 완론계와 남인계를 중심으로 정치운용을 하고자 했고 그 운용 원리를 ‘탕평’이라고 해 명분상으로는 정파의 조정에 의한 정국안정의 도모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정국운영에서 군주의 리더쉽을 강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영조가 송인명의 협조에 힘입어 노론을 견제할 목적으로 정국운영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탕평을 내세웠지만 영조로 하여금 리더쉽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탕평책에 의한 정치적 안정과 타협을 모색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戊申亂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를 관통하는 정치과정에서 戊申亂은 군주로 하여금 정치적 통합과 민심수습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정치적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탕평론 창출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종래 주자학에서 견지되던 의리론이 신하를 정치적 주체로 해 군주를 재단하던 기준을 부여하던 데 비해 군주를 주체로 신하에게 군주에의 충성을 강요할 만큼의 새로운 군신관계의 규범으로의 질적 변용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신임사화가 영조의 정통성과 관련되므로 집권의 정당성을 의리로 합리화해야 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었다면, 戊申亂은 영조로 하여금 각 당파간의 타협과 조정에 의한 정치적 통합 곧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통합과 민의 통합을 통치의 급선무로 인식하게 한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영조는 戊申亂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봉당에 있다고 보고 世家大族들이 거국적인 견지에서 자신의 탕평정책에 협조(同寅協恭)한다면 정치의 중흥에 일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戊申亂으로 인해 집권의 정통성을 얻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난역을 평정한 후 비망기<sup>14)</sup>를 내린 것도 민심을 위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역적과 같이 일을 도모한 자라도 개과천선한다면 용서해줄 것이라 하고 兵亂을 입은 고장 사람들의 구휼을 명한 것도 백성을 안집시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취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노론의 명분을 인정해주는 것과는 다른, 민심 수습의 차원에서 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치였으며 무엇보다 왕권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이에 영조는 각 정파를 기용하는 데 일괄적으로 상호등용 원칙을 적용하고자 했

14) 영조는 비망기로 양민과 역적이 섞여 있어 죄 없이 죽게 된 자들을 안정시키고 구제할 방도를 방백과 수령, 按撫, 繡衣 등에게 지시했다. 『영조실록』, 영조 4년 4월 22일 임인.

고 이러한 원칙은 영조에 동조하는 관료세력의 공정한 인사원칙 표방으로 이어졌다. 기유처분(1729년)<sup>15)</sup>은 그러한 원칙의 천명이었다. 당시 대표적인 완론 탕평파의 한 사람인 송인명은 영조에게 ‘大公至正’의 도리로 신하를 복종시킬 것을 아뢰고,<sup>16)</sup> 남인과 북인의 등용에는 상호등용(互對)으로 하는 것이 公道를 넓히는 길임을 강조했다.<sup>17)</sup> 그러나 송인명을 비롯한 군주 친위세력이 사실상 상호등용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인정에 끌려 인사권을 전횡하자 이를 비난하는 소리가 없을 수 없었다. 군주가 정국운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親군주적인 관료세력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군주 역시 탕평파에 이용당한 결과가 된 것으로 이는 군주의 의리론에 치명적인 결함이 되는 것이다. 반대정파로부터 비난을 막아낼 명분마저 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즉 영조가 자신을 추종하는 탕평파와 함께 실시한 정과간 조정정책은 그 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불공정함과 정치적 의도로 인해 주자학적 의리론으로 무장한 노론 준론과 산림세력의 비난을 초래하기에 적합했다. 이는 결국 영조의 탕평정책의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 그 원인은 탕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세웠던 군주의 의리론이 주자학적 의리론과는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탕평책을 펴면서 제일 먼저 ‘당론을 없앨 것’을 내세웠고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하게 하기 위해 충효의 논리<sup>18)</sup>로 호소한 점은 주자의리론과 다른 군주의리론의 성격을 드러낸다. “임금과 신하는 父子와 같으니 아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어 서로 시기하고 의심해 저쪽은 억제하고 이쪽만을 취한다면 그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불안하겠는가”<sup>19)</sup>고 하고, “임금과 아버지는 비록 다르기는 하나 충효가 어찌 두 가지이겠는가”<sup>20)</sup>는 논리로 臣을 설득하려던 것은 곧 군신관계를 부자관계로 의정해 父子親숙적인 효를 강요하려는 군주의 논리였다. 말

15) 이는 신임옥사로 죽은 노론 4대신 가운데 임인옥안에 친족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조태채와 이건명을 신원한 조치이다. 이를 계기로 영조는 지나친 당론을 억제하고 붕당을 타파하기 위해 노소론 완론 사이의 조정에 주력해 이광좌가 지도하던 소론 준론계와 오광운을 포함한 청남계가 함께 정계에서 물러나게 했다.

16) 『영조실록』, 영조 12년 5월 14일 정미.

17) 『영조실록』, 영조 16년 6월 5일 갑술.

18) 『영조실록』, 영조 1년 1월 21일 경신.

19) 『영조실록』, 영조 1년 1월 3일 임인.

20) 『영조실록』, 영조 48년 7월 4일 정유.

하자면 영조는 신료에게 부자관계에서와 같은 가부장적 권위를 행사해 군신간 지배 복종관계를 확립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君臣義습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던 신료에게 부자친합적 규범을 요구하는 것은 君의 유교적 소양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조가 君臣主義와 父子主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자학의 명분논리와 군신분의 논리에 투철해 있는 臣으로부터 비판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다.

## 2. 의리론에서 君權과 臣權의 상충

朱子는 일찍이 “벼슬은 군신의 분의를 실행하는 것이니, 분의라고 하고 보면 사세의 가부와 자신의 진퇴를 본디 구차하게 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다”<sup>21)</sup>고 해 出仕에서의 의리와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했는데, 유자들의 ‘군신분의’적 의리론은 주자의 출사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신 사이는 부자 사이와 같으나, 간쟁할 때는 임금과 아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군신 사이에서는 의를 주장하므로 바른 것을 주장해 범하는 것이 있을지언정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니...”<sup>22)</sup>라고 해, 오히려 정치적 행동의 경우에는 군신과 부자 사이를 엄격히 구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유교의 규범주의적인 군신관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던 산림세력이 주자학적 명분론과 의리론을 제기하는 것은 군주의 통치행위 자체를 문제시할 만큼 지속적이고도 집요했다.

영조가 탕평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군주지배의 지속을 피하는 동시에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는 데 대한 신료의 입장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자와 그에 반대하는 자, 즉 탕평론자와 反탕평론자로 대별할 수 있다. 反탕평론은 戊申亂 이전에는 노론, 소론, 남인계 준론세력 모두의 공통된 입장이었으나 戊申亂 이후로는 소론과 남인 가운데 준론을 중심으로 한 탕평 주장자만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의 정치적 사고는 완론계와는 달리 다양했다. 따라서 영조의 탕평정책에 시종 비판적이고 ‘의리’에 입각한 反탕평론을 주창한 자는 주로 노론 준론계 즉 산림세력이었다.<sup>23)</sup> 이들 산림세력이 군신유의를 고수하는 데 비해 영조는 군신관계의 윤리를 군

21) 『宋子大全』, 부록 권2, 年譜.

22) 『영조실록』, 영조 15년 1월 6일 계축.

신분의라는 명분 아래 신료를 구속하려 했다.

영조의 군신분위는 전통적인 군신관계의 도덕적 규범인 군신유의를 내세우는 산림에 대항하기 위해 강조되었으나 여기서 군주가 생각하는 군신분위와 산림의 군신분위는 그 의미가 자못 달랐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군신분위라는 주자학적 규범이 주장 세력에 따라 의미의 변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림세력이 생각하는 군신분위는 어디까지나 주자의리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주에 대한 충성은 곧 주자적 의리를 투철히 하는 일이며 그것은 또한 당시 정치적인 현안 문제로 되어 있던 국시문제의 시비를 밝히는 것과도 연관된다.

군주의리론과 신료의리론이 상충하는 것은 국시를 정하는 문제와 군주의 충효의 요구에 응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이 시기 신료들, 특히 영조의 탕평정책에 부정적이던 산림세력에게 별개의 문제로 여겨졌던 듯하다. 국시와 충효에 관한 한 분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하가 군주를 도와 世道를 바로 잡아 갈 의무가 생기는 것은 군주가 군주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뿐이다. 즉 조선에서 신하의 충성의무는 군주에 달려 있을 뿐 절대규범은 아니었다. 신하가 군주의 ‘황극’논리 즉 왕권강화의 이론적 기초인 건극을 보는 입장은 이와 같았다. 그렇다면 군주의 통치좌표의 제시와 리더쉽 발휘에 대한 신료의 대응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 후기 정치과정에서 군주가 산림을 포함한 지배세력과 합일된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권위에 손상을 가하게 된 원인이 규명될 것이다. 이는 결국 주자학적 규범의 강고함이 탕평기 정치과정에 미쳤던 관계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군주를 국가의 최고수반이자 최고통치권자(惟皇作極)로 인정하고 임금을 정치통합의 실질적 주체이며 주도권자로서 역설한 이래, 조선에서는 성학을 논할 때마다 황극<sup>24)</sup>의 중요성을 거론해 왔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황극의 거론 주체가 신료가 아닌 군주로 바뀌어 군주 자신에 의해 황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황극의 의미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논이 있게 되었다. 군주에 의해 황극이 세워지고 난 뒤라야 신하는 군신간의 의를 고려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황극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했다. 즉 臣의 출처에 군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전제조건인 셈이어서

23)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진상, 이재, 한원진, 이의현, 윤봉구 등을 들 수 있다.

24) ‘皇極’이란 본래 『書傳』의 「주서」에 있는 홍범 구주에 나오는 말이다.

君이 君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군신분위는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된다. 그러나 점차 주자학적 의리론에 입각한 출사관이 지배적인 규범으로 내면화 되자 臣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출사를 포기하면 그뿐이고 군주에게 군신분위의 규범을 적극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던 것이 이제는 군신이 각각 서로에게 규범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황극과 군신분의 논리가 군신 각각의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선 신하가 임금에게 요구하는 직분윤리이자 규범을 보자. 그것은 황극으로 표현되는데, 황극이란 무엇보다도 임금의 私意가 제거된 이른바 ‘無偏無黨’<sup>25)</sup>이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황극이 무편무당의 공정함을 지니려면 무엇보다 의리를 밝히고 속득을 가려내는 일 즉 의리의 명변이 전제조건이 된다. 또 “임금은 자신의 好惡와 與奪을 한결같이 공도에 따라 조금이라도 私意가 들어가서는 안된다”<sup>26)</sup>는 말이 있듯이 건국의 기준은 의리의 명변과 함께 공도도 그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임금이 공도에 따르는 것은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은 『대학』의 誠意 공부에 힘써야 한다”<sup>27)</sup>고 하는 것을 보면, 건국과 성학론이 연관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사실상 공도가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마음이 기준이 되므로 극의 기준이 애매해질 소지가 있다. 더구나 영조의 성품상의 폐단은 신하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에의 승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臣이 極으로서의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조는 자신의 황극논리를 ‘탕평의 도’와 연관지음으로써 시비의 판정권<sup>28)</sup>을 지닌 채 신하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에 동조시키려 했다. 나아가 자신의 탕평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산림에 대해서는 군신분위라는 명분으로 구속하려 했다. 그러면 산림은 언제나 ‘君은 臣을 예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맞섰다. 원래 군신관계는 군신유의로 표현되듯이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이러한 관계는 君과 臣이 모두 ‘道の 실천’이라는

25) 원래 無偏無黨은 「홍범」에서 王道가 蕩平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無偏無黨, 王道湯湯, 無黨無偏, 王道徧徧,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이란 표현이 모두 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26) 『영조실록』, 영조 6년 11월 1일 병인.

27) 『영조실록』, 영조 6년 11월 1일 병인.

28) 강광식, 「체제정비 난숙기의 개혁사상」, 『조선시대 개혁사상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11쪽.

공통의 목적을 향해 도를 행하는 공통의 태도를 지닐 때 성립하는 관계이다.<sup>29)</sup> 따라서 臣의 입장에서 보면 君이 臣을 예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언제나 물러날 수 있는 것 또한 명분에 합당한 일이었다. 조선에서 신하는 ‘天理의 올바른 바’를 어거가면서까지 君에 대한 충성관계를 보지하는 것은 오히려 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臣으로서의 직무 유기이기도 하다. 군신관계의 윤리가 천리에 기초하는 규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왕권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에 대한 저항

주자를 최고로 존신하던 산림에게 주자의 붕당론에서 벗어난 영조의 誘引은 출사의 명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존경받던 儒者의 한 사람인 이재는 사직소<sup>30)</sup>에서 군주의 私意가 개재된 통치 아래에서는 ‘破朋黨’도 ‘出仕’도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이 또 하나의 당을 만들지 않을까 염려한 영조는 산림이 전유하던 직책인 贊善과 臺諫職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를 임금의 고유권한이라 해 간여할 수 없는 것으로 했다. 산림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인식한 영조는 그들의 간섭을 막고자 정치참여의 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조 낭관과 한림의 自代制와 通淸權을 없앤 것도 실은 그러한 조치의 하나였다.<sup>31)</sup> 이는 한마디로 제도의 혁파를 통해 黨習의 제거를 꾀하고 나아가 국가기강의 확립을 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나, 이 일로 영조가 노린 정치적 목적은 국정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있었다. 말하자면 군주가 자신을 보좌할 臣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장치를 새로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조 낭관의 선발을 이혁하는 절목의 내용은 이조록 및 낭관이 주장해 通淸하던

29) 渡辺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81쪽.

30) “당나라 문종의 말에 하복의 도적을 제거하기는 쉬워도 조정의 붕당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신은 두 가지를 없애기는 모두 쉬우나 군주의 私意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조실록』, 영조 4년 4월 11일 신묘.

31) 영조는 이 제도를 경장할 생각을 영조 17년 2월 조현명의 주선으로 柳壽垣과 대담하는 자리에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유수원은 「官制序陞圖說」을 바쳐 明清의 제도인 序陞法을 써서 차례대로 승진시켜야만 당쟁의 폐단을 없애고 紀綱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영조도 ‘吏郎과 翰林이 없어진 후에야 당파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규례를 혁파해 그 권한을 판서와 참판에게 집중시키며 玉堂이 아닌 兩司에서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sup>32)</sup> 이러한 판서 권한의 강화는 바로 판서를 추천, 임명하는 군주와 재상의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당시 영조의 탕평정책을 보좌, 추진하기 위한 三相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권력의 견제구도가 군주와 재상이 같은 權力核 안에 존재하면서 산림세력과 대결하는 것이 된다. 같은 시기에 이뤄진 翰林回薦法의 이혁 절목도 춘추관 영사 김재로, 감사 송인명, 조현명, 지사 정석오, 동지사 정우량 등이 의논해 정했는데 모두 10조목으로 되어 있다.<sup>33)</sup> 이 이혁안도 이조전랑처럼 더 넓게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상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황경원을 비롯한 노론 준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조는 결국 당상관의 ‘回圈’ 규례를 ‘會試’로 개정했고, 후의 논의에서는 정우량의 건의로 ‘한림소시법’으로 개정했다. 이는 시어소에서 대신, 관각 당상, 춘추관 당상들이 입회해 회시를 보아 최종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으로<sup>34)</sup> 재상이 주도해 결정권을 주도한다는 원칙이 군주가 주도해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한림회권법은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던 자가 사대부들이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음을 근심해 청요직의 권한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廢錮된 친족을 끌어다 진출시켜 탕평의 길을 넓히려 했다”<sup>35)</sup>는 평이 말해주듯이 蕩平派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인물을 등용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했다. 결국 淸流로 불리는 사대부의 청요직 권한을 혁파하고 완론계 탕평파로 채워진 재상권이 강화됨으로써 영조의 탕평정책은 이른바 탕평당 및 척족과 연계되었고 이들의 권귀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로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인사권에 대한 군주의 권한은 확대되었으나 정치적 統攝의 길은 멀어졌다.

이로써 주자의리론을 견지하면서 명분 있게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노론과 산림세력은 국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군주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탕평파와의 길항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명분이 후퇴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들의 입지는 산림세력의 득세를 기피하는 군주 때문에 더욱 좁아졌다.

32) 『영조실록』, 영조 17년 4월 22일 병진.

33) 『영조실록』, 영조 17년 4월 22일 병진.

34) 『영조실록』, 영조 17년 4월 25일 기미.

35) 『영조실록』, 영조 17년 4월 22일 병진.

산림을 등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산림 가운데 주자학에 대해 이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정제두<sup>36)</sup>나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양득중,<sup>37)</sup> 이덕수<sup>38)</sup> 등을 예우함으로써 산림에 비우호적임을 과시하고자 한 영조의 태도는 이들의 입지를 더 좁혔다. “대저 신하는 올바른 임금을 만난 뒤에야 名臣이 될 수 있는 것이니...”,<sup>39)</sup> “한나라와 당나라는 엄수와 번진 때문에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사대부 때문에 망할 것이다”<sup>40)</sup>는 말은 영조가 산림과 사대부에 대해 지닌 태도를 잘 보여준다. 영조의 사대부<sup>41)</sup>에 대한 혐오는 이 정도가 되면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의 이러한 태도는 신하를 작록으로만 얹매고 분의로만 내모는 형상으로 비쳐져<sup>42)</sup> 신하들은 人主가 사망의 표준<sup>43)</sup>임을 내세우고 분의를 내세워 신하가 탕평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皇極의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연목구어와도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다.<sup>44)</sup>

산림은 여전히 주자의 의리론을 들어 인재를 기용할 것을 권고하는 명분론적인 입장에 있었다. 이에 당숙 평정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던 기도가 번번이 산림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자 영조가 이를 ‘臣擇君’,<sup>45)</sup> ‘臣強君弱’<sup>46)</sup>의 형세라고 할 만큼 주자학적 의리론이 군주에게 가하는 정치적 압력은 강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군주에 의해 정치적 주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하가 주도하는 형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탕평정책에 협조적이지 아닌 신료세력은 주자학적 의리론에만 매달려 정치적 행동을 했는가?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적인 것은 아닌가? 다음에 살펴볼 과정은 정파세

36) 『영조실록』, 영조 12년 8월 11일 임신.

37) 『영조실록』, 영조 10년 1월 18일 을미, 영조 17년 2월 23일 무오, 영조 18년 4월 5일 갑오.

38) 『영조실록』, 영조 12년 11월 5일 갑오, 영조 12년 11월 25일 갑인.

39) 『영조실록』, 영조 12년 7월 5일 정유.

40) 『영조실록』, 영조 12년 5월 14일 정미.

41) 사대부라고 하면 조정에서 벼슬했던 모든 전현직 관직자와 앞으로 벼슬할 세력까지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영조가 『실록』에서 말하는 사대부란 자신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노론 산림세력을 주로 가리킨다.

42) 『영조실록』, 영조 즉위년 12월 6일 을해.

43) 『영조실록』, 영조 2년 8월 3일 임술.

44) 『영조실록』, 영조 4년 8월 7일 을유, 영조 6년 1월 12일 신사.

45) 『영조실록』, 영조 13년 8월 5일 신유, 영조 13년 9월 3일 무자.

46) 『영조실록』, 영조 14년 5월 2일 계축.

력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명분을 핑계해 현실 사이에서 타협하는 양상과 그 갈등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 IV. 군신간의 정치적 타협: ‘大蕩平論’과 ‘調劑’

辛壬義理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일단 없어지게 되자, 노론의 김재로와 원경하, 소론의 송인명, 조현명, 정우량, 淸南의 오광운 등이 연합해 이른바 ‘大蕩平論’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sup>47)</sup> 이는 각 정파세력이 권력획득을 위해 군주와 정치적 타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론과 소론이 거국적으로 탕평정책에 참여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정파를 당색별로 분류해 균등하게 등용하는 폐단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단지 숫자상의 배열에 의한 상호등용보다는 인재의 우열을 등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모두 조현명의 互對式 인사방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이 시기 노·소론 조정의 탕평의 추구는 대다수 유자와 노론 준론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경하가 ‘互對’보다는 ‘公心’에 의해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저의에 私心이 개재되어 있는 한 가차없이 비판을 받았다.<sup>48)</sup> 노·소론 가운데 타협을 주장하는 자는 아첨하는 자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송인명과 원경하에 대한 史臣의 평<sup>49)</sup>을 보면 주자의리론이 출사의 기준이 되고 있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즉 영조가 20여 년 동안 추구해온 탕평정책이 오히려 世道를 타락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영조의 통치 아래에서는 벼슬하지 않고 은둔하는 것을 오히려 자중자애의 바른 태도로 보고 있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다. 유신들은 정치적 목표로 調劑를 거론하는 것을 衰世의 일<sup>50)</sup>로 보기까지 했다. 이는 군주가 조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군주권 강화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 것임을 臣들이 파악하고 이를 공도라든가 천리라는 더 큰 명분 속에 종속시키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주와

47) 朴光用, 「朝鮮 後期 ‘蕩平’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5쪽.

48) 『영조실록』, 영조 18년 8월 3일 기축.

49) 『영조실록』, 영조 22년 8월 11일 갑술, 영조 16년 6월 11일 경진.

50) 『영조실록』, 영조 23년 10월 9일 병인.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정파가 있긴 했으나 대다수의 사대부집단은 의리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론계 산림으로 영조의 지우를 받았던 박필주는 탕평책의 조제와 동인협공, 흥범의 도리는 다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51)</sup> 그는 ‘破朋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탕평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략상 위에서 언급한 조제와 시비분변이라는 양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52)</sup> 영조의 탕평정책이 의리의 분별을 중시하는 노론으로부터도 공격받고, 남인은 남인대로 영조의 정책을 비난하자 영조는 신임옥사의 의리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작업의 하나로 「大訓」을 지었다. 이는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다시 한번 막아 정치적 영도력을 집중시키려는 계산에서 행해진 조치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치적 쟁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의리를 분변하는 것이 선결작업이라는 것을 자각한 데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대훈」에서 君位 세습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 영조는 끊임없이 시뻐거리가 되고 있는 임인년의 鞫案을 태워버려 그 화근을 없애고자 했다. 국안을 없앤 이후 다시 지난 일을 들추어내는 자가 있으면 국법으로 처단할 것을 명해 ‘국시가 아주 정해지는 듯’<sup>53)</sup>했다. 그러나 신임사화의 의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상소는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대훈」이 辛丑·壬寅年의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보고 경종의 질병을 「대훈」에 첨가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sup>54)</sup> 이는 소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으로 ‘국시’ 결정이라는 사안을 틈타 자신들의 정치적 공리와 명분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노론의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의리론은 상대정파의 세력을 탈취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공론과 인심이 대체로 소론의 탕평책보다는 오히려 노론의 의리분변론에 기울고 있었다<sup>55)</sup>는 정황

51) 『영조실록』, 영조 19년 4월 4일 정해.

52) 『黎湖集』, 권5, 告歸進八條疏, 영조 19년 4월. “臣聞自古國家之爲患莫如朋黨 大則宗社覆亡 小亦致寇召亂 ... 與自殿下卽昨以來 垂意於蕩平之治 至誠欲祛朋黨 此誠皇極之要道 當今之急務也... 自昔於黨論方盛之時 處之之道有二焉 一則調劑 一則分別 其主於調劑者 固非一任籠罩而置是非於不白也 其主於分別者 又非專務刻核而不存忠厚之意也 虞廷之同寅協恭 洪範之無作好惡 率用是道而後來程朱子之 所言 總不可謂 其各持一義而不相爲用也...”

53) 『영조실록』, 영조 17년 9월 24일 병술.

54) 『영조실록』, 영조 22년 5월 27일 임술.

55) 『영조실록』, 영조 22년 7월 28일 임술, 영조 28년 12월 18일 갑진의 史臣 評.

은 이를 묵인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상황이 복잡해지자 각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정파를 정치 전면에 부상시키게 된다. 새롭게 부상한 정치세력에 의해 의리론적 성격은 약화되고 권력획득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다. 영조 26년 균역법의 실시를 전후로 정파는 다시 새롭게 결집되는 듯하더니 왕실의 외척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는 이른바 ‘탕평당’의 전횡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탕평당은 군권과 유착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목적일 뿐 권력획득에서 명분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에 이천보와 유척기, 남유용 등이 홍봉한 등 척신의 權貴化를 반대하면서 대립하고, 소론의 이종성도 사도세자의 보호문제로 노론의 김상로 등과 대립하게 되었다. 정파간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려는 영조의 노력이 오히려 탕평당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정치과정에서 정파간의 대립과 연합, 공조체제의 성립은 명분이 아닌 권력정치의 속성에 의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조가 집권한지 중반을 넘은 31년, 을해역옥 이후로는 노론계 삼상 정권 시대가 장기간 계속되어 여러 정파가 연합하는 형태로 정권이 유지되었다. 이 시기에 사도세자의 처신문제로 인해 노론은 동당, 남당, 중당의 3파로 분열되었다. 당색이 이처럼 세분되자 영조는 조선의 당은 군자소인의 당이나 충역의 당이 아니라 노론·소론·남인·북인의 당이 되어 요순이 다시 나오더라도 세도를 일으키기가 어려운 형세라고 해<sup>56)</sup> 붕당의 구분기준마저 부정했다. 이는 당을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忠逆과 같은 의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당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감란록』과 『천의소감』의 반포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영조는 ‘體天建極 聖功神化’라는 존호를 받은 자신을 부끄러워할 만큼<sup>57)</sup> 리더쉽 상실을 비판했다. 주자의리론과 군주탕평론과의 상충에서 주자의리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잠시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해서 군주탕평론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정파세력 사이의 권력이동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王權의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정파세력이 함께 군주에 대항적인 관계에

56) 『영조실록』, 영조 31년 9월 22일 기사.

57) 『영조실록』, 영조 40년 5월 26일 정축, 영조가 이 존호를 받은 기록은 『영조실록』, 영조 39년 12월 14일 병신 기사에 보인다.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군신간 의리논쟁에서는 신하의 주자학적 의리론을 군주의 탕평론이 초극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영조의 喬木世臣에 대한 증오<sup>58)</sup>는 亂臣賊子에 비길 정도였다. 영조가 특지로 박세채의 從享을 명한 것도 그가 군주의 정치적 주도권을 주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왕권이 정파와 상충할 때 군주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한 채 정치과정은 오히려 영조와 혼인 관계에 있는 戚臣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왕세손의 외조인 흥봉한 중심의 북당과 정순왕후의 외척인 김귀주를 중심으로 한 남당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들의 견제세력으로 다시 노론계의 청명당이 결집되었다. 淸黨·明黨·時體黨이라고 하고 그 괴수로서 김종수와 구상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들이 영조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이다. 영조에 의하면 이들은 “淸明을 사모해 임금과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저버리면서 명예를 남기고 탐내는”<sup>59)</sup> 무리들이다. 아울러 김관주와 김귀주 두 척가는 “이제 다시 노론이네, 소론이네, 남인이네, 소북이네 하는 자는 내 신하가 아니요 난역자”<sup>60)</sup>라고 배척이 되었다. 곧 당인과 척리가 동시에 비판을 받은 것이다. 군신대결구도에서 君에 대항적인 관계인 한에서 臣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이해를 함께하는 동조세력 내지 협조자였던 것이다.

결국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군주가 노론 산림세력을 체제의 공조자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함으로써 군주는 자신의 뜻에 영합하는 정치세력만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신임사화와 戊申亂, 을해역옥 같은 정치적 사건을 경험한 영조는 노론의 의리가 국시인 정치적 현실을 인정한 위에 산림세력과 소론을 체제의 협조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탕평이라는 이름으로 거국적인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탕평책을 추진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 정치안정과 보위의 정당성을 동시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론과 노론에 기반한 산림세력은 의리를 명분으로 영조의 정치운영에 간섭하고자 했고, 영조가 정파를 무차별적으로 일정하게 등용하는 식의 인사정책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노론의 정치운영방침은 정치권력을 독점하

58) 영조는 이 시기가 되면 증오가 극에 달해 “(교목세신들은) 孔聖이 이른바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이니, 바로 亂臣賊子인 것이다. 내가 비록 죽이지 않아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인데 여러 신하들은 알고 있느냐?”고 할 정도였다. 『영조실록』, 영조 40년 5월 26일 정축.

59) 『영조실록』, 영조 48년 7월 23일 병진.

60) 『영조실록』, 영조 48년 7월 23일 병진.

고자 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노출시켜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더구나 산림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표방한 영조 체제 아래에서 영조가 표방한 정책 논리는 체제의 통치이념인 주자학적 의리론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산림세력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왕권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에서 군신관계의 규범으로 기능했던 주자학적 의리론은 정치권력을 획득 또는 상실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주자학적 의리론이 정치과정의 잣대로서 작용한 데는 군주에게 요구하던 聖學이 주관주의적이고 내면적인 것이어서 충역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지 못한 데 연유하는 측면도 있다. 즉 군신지의라든가 분의의 문제는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이나 척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는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주자의리론이 신하들에게 그 지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君主聖學論이 정치운영과정의 사실상의 주체인 신하와의 관계를 정립할 만한 모형을 제공하지 못하고 군주만의 윤리규범이 된 것은 결국 臣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허용했다. 더구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주자의리론이라는 것이 군주로부터 권력의 중심을 자신들에게로 이동시켜 군권을 제약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군주에게는 聖學論이라는 이름의 규범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실제 정치과정에서는 주자학적 의리론을 적용하도록 강요한 측면이 있다.

영조가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탕평론을 제기했지만 주자의리론의 집요함과 공고함은 정치과정에서 군주의 의리론과 상충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는 영조 즉위의 정통성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왕권의 강화를 저지하도록 작용했다. 더구나 군주는 관직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과다경쟁체제를 지양하기 위해 각 정파에서 일정한 비율로 등용함으로써 권력을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군주의 리더쉽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자 했지만 이 방식이 현상적이고 산술적인 조정방법에 지나지 않아 각 정파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탕평파’라는 또 다른 정파에 의

한 권력의 독점과 이들의 權貴化로 끝나게 된 사실은 군주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명분이 공도라든가 분의를 내세우는 더 상위의 주자학적 명분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가 調劑를 통한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군주의리론의 이념적 명분성이 미약하다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군주와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정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군주, 그리고 그와 연합한 집권세력 모두가 명분의 면에서 밀리고 말아 정치적 몰락을 추구하고 있음을 영조 연간의 의리논쟁은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朱書百選』

『宋子大全』

『黎湖集』

『黎湖先生文集』

『四書集注』

『中文大辭典』

강광식,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의 구조와 기능」, 『조선조 유교사상과 유교정치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강광식 외, 『조선시대 개혁사상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溝口雄三, 「중국의 공과 일본의 공」, 『대동문화연구』 28집, 1993.

김성윤, 「정조 철학사상의 정치적 조명」, 『부산사학』 2526 합집, 1994.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7.

김준석, 「조선후기 국가재조론의 대두와 그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마루야마 마사오, 박충석·김석근 공역, 『충성과 반역』, 서울: 나남, 1998.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광용,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 『한국사론』 10, 1984.

박병련, 「유교 이념과 조선조의 정책과정」, 『조선조 유교사상과 유교정치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박충석, 『한국정치사상사』, 서울: 삼영사, 1982.
- 박충석, 「유교의 정치학: 원리적 고찰」 『사회과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5, 1995.
- 박충석, 『조선주자학의 존재양식: 그 규범적 성격』, 『사회과학연구논총』(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호, 1998.
- 박현모, 「정조의 성왕론과 경장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배병삼, 「조선시대 정치적 리더십론」 『한국정치학회보』 31-4, 1997.
- 설석규, 「16-18세기의 유소와 공론정치」,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손문호, 「조선후기의 정치사상사 연구」, 『서원대사회과학연구』 9, 1996.
- 오석원, 「유학에 있어서 의리사상의 본질과 기능」, 『안동대논문집』 7집, 1985.
- 유미림, 「조선후기 통치이념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우성, 「이조 유교정치와 ‘산림’의 존재」, 『한국의 역사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이원택, 「현종대의 복제논쟁과 공사의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1990.
- 정구선, 『조선시대 천거제도연구』, 서울: 초록배, 1995.
- 정구선, 「영조대 산림의 장소와 반탕평론」, 『경주사학』 14, 1995
- 정경희, 「君師 영조의 성리학 진흥책」, 『한국학보』 97, 1999.
- 정경희, 「영조후반기(1749년-1776년) 경연과 영조의 의리론 강화」, 『역사학보』 162, 1999.
- 정만조, 「영조대 초반의 탕평책과 탕평파의 활동」, 『진단학보』 56, 1983.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탕평에서 노론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 111, 1986.
- 정옥자, 『조선후기 문화운동사』, 서울: 일조각, 1988.
- 정윤재, 「정약용의 자작적(自作的) 인간관과 왕정개혁론: 조선후기 정치권력의 공공성문제와 관련해」, 『한국정치학회보』 33-4, 1999.
- 정홍준, 「17세기 대신과 유현의 역학관계」, 『사충』 42, 1993.
- 지두환, 「조선후기 영조대 경연과목의 변천: 조선성리학 확립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81, 1996.
- 최봉영, 「조선 시대 선비들의 유형과 행위유형」,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1984.
- 渡邊浩, 『近世日本社會と宋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5.
- 丸山眞男, 『丸山眞男講義錄』 4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8.

Haboush, Jahyun Kim, *The Confucian Kingship in Korea*,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Haboush, Jahyun Kim, "the education of the yi crown prince: a study in confucian pedagogy,"

Wm T. de Bary & Jahyun Kim Haboush,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Deuchler, Martina,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Mas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Wm T. de Bary, *Neo-Confucian Orthodoxy and the Learning of the Mind-and-He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주요어

왕권, 군주의리론, 주자의리론, 탕평론, 調劑, 군신간 갈등